##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71

발의연월일: 2021. 9. 2.

발 의 자:성일종·김정재·신원식

유상범 • 이채익 • 전주혜

추경호 · 김기현 · 임이자

양금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 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중령: 53세"를 "중령: 55세"로, "소령: 45세"를 "소령: 53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 단축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는 제36조에 의거 전역일의 연도가 바뀌어도 새로운 정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제3조(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령의 연 령정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47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49세로,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51세로, 2032년 12월 31일까지는 5 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	제8조(현역정년) ①
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	
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	
다.		
1. 연령정년		1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u> 중령: 53세</u>		<u> 중령: 55세</u>
<u>소령: 45세</u>		<u>소령: 53세</u>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